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6-2175(2026.03.26.)
(유효기간 : 2026.03.26. ~ 2027.03.31.)

100세 시대, 은퇴설계의 필수
NH퇴직연금
NongHyup Bank Retirement Pension

가입자 교육 자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동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교육 이수방법

NH농협은행은 다양한 방법의 가입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교육 방법 변경

가입자교육을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 DC/IRP : NH스마트뱅킹 또는 올원뱅크 > 퇴직연금 > 알림서비스 설정 > 가입자교육 방법 > 이메일 또는 알림톡 설정
- DB : 사업장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여 변경 신청 요청

NH농협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해주신 고객님의께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목 차

1.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노후준비의 중요성	04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05
노후준비 기본전략	05

2. 퇴직연금제도 이해

퇴직연금제도란?	06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06
확정급여형(DB)	07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08
표준형DC	09
개인형퇴직연금 (IRP)	09
퇴직연금제도 중단 등	10

3. 알면 유용한 퇴직연금 정보

퇴직연금 절세전략	11
퇴직연금 운용전략	12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14

4. 퇴직급여 수령 및 이전

급여지급절차(IRP이전) 및 수급요건	16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17
퇴직연금제도 이전	18

5. 퇴직연금 비대면채널 안내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이용 안내	19
퇴직연금 모바일앱 이용 안내	21
퇴직연금 카카오톡 채널 활용 방법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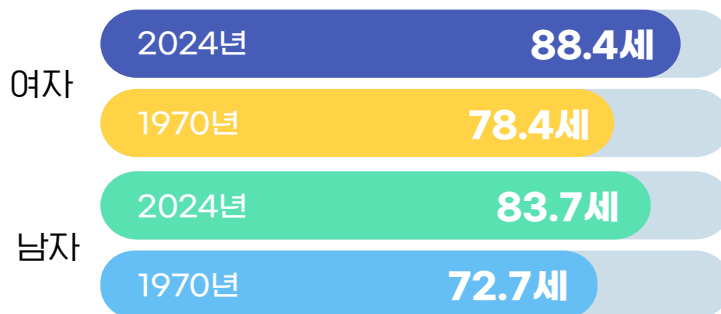
노후준비의 중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가입 등 노후 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후준비 왜 필요할까요?

2024년 기준, 60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83.7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8.4세로 100세시대가 눈앞에 도래하였고, 은퇴이후의 노후기간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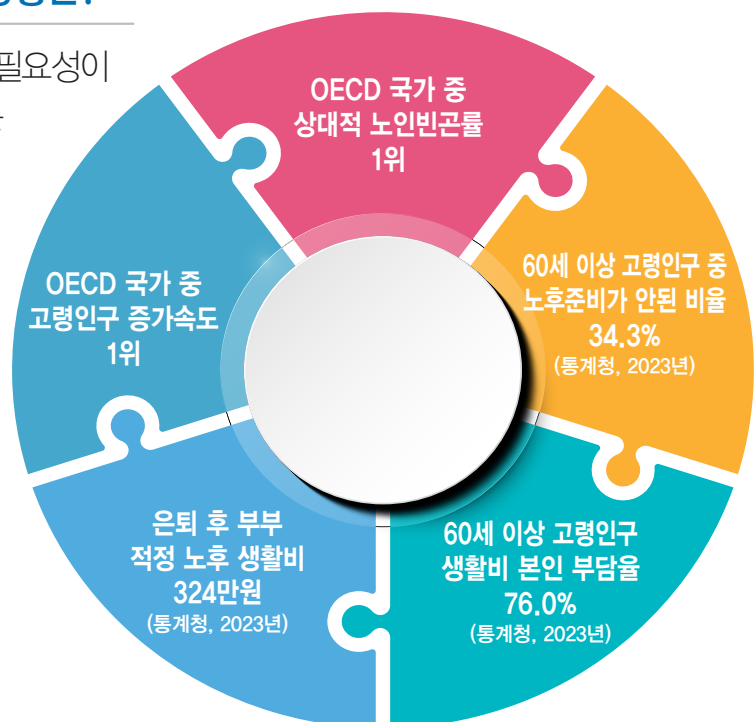
- 기대 수명 비교 -



〈출처:통계청-생명표, 2024〉

한국 고령인구의 노후자금 준비 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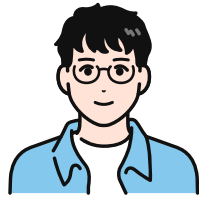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준비 자금의 필요성이 더 커졌으나 고령 인구의 노후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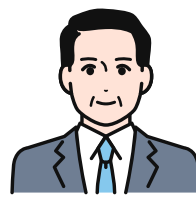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흐름을 고려하여 재무목표를 세우고, 자산·부채관리를 통해 행복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고려사항〉



자산준비기



자산성숙기



노후생활기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결혼, 주택마련, 자녀출산	자녀교육, 은퇴준비	자녀결혼, 은퇴 후 취미생활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통한 종잣돈 모으기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한 자산의 증식	노후자금 인출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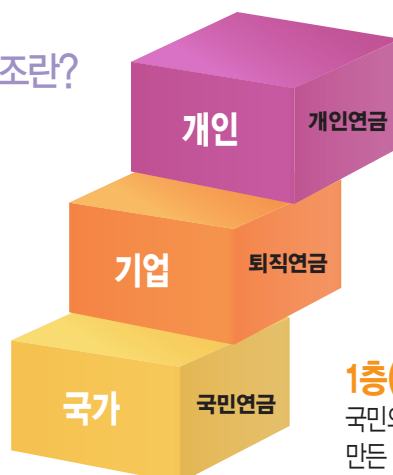
노후준비 기본전략

3층 연금구조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정답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의 준비 수단이지만 소득대체율 감소, 노인부양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윤택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업, 개인 각각의 노력을 모아 안락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3층 연금구조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3층 연금구조란?



3층(자기보장) - 여유로운 노후생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

2층(기업보장) - 안정적인 노후생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1층(국가보장) - 기본적인 노후생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I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DC)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급여종류	퇴직소득을 개인형IRP로 과세이연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퇴직시		• 연금 : 만 55세 이상 및 가입 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 일시금 : 제한없음
퇴직급여수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기간 (퇴직금제도와 동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 가입자부담금 : 연간 1,800만원 한도 • 퇴직급여 : 퇴직 일시금 범위
적립금 운용지시 및 운용손익 귀속	사용자(회사)	가입자	가입자
개인 추가납입	불가	가능 ^{주)}	가능 ^{주)}
중도인출	불가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주)}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 최대 1,485천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는 납입금액의 13.2%** 최대 1,188천원 세액공제 가능

※ 가입자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절세전략은 11page 참고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정해져 있고, 사용자(회사)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 **퇴직급여 수준** :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I 최소적립금이상 적립의무 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 적립금 비율(이하 '최소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구 분	2012~2013	2014~2015	2016~2018	2019~2021	2022~
최소 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사용자의 의무

근퇴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0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하여야 합니다. (미해소시 사용자에게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근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알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합니다.

I 적립금 초과분 처리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경우 기업은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150%를 초과하고 기업이 요구한 경우 금융기관은 150% 초과분을 기업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I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적립금의 여러 환경들을 고려하여 개념, 조직, 목표, 전략, 관리 등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공유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정', '사규',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연금 등의 대다수의 기금들도 특성에 맞춰 작성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 **의무사항**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사용자(회사)가 적립해야 할 부담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며 운용결과에 따라 장래의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업 적립금 수준** :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부



※ 임금과 연간임금총액의 범위

임금은 기업이 '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퇴직급여 산정 제외 임금 : 일시적·불확정적인 성과급, 출장비 등 실비변상 금품

I 기업 적립금 납입시기 및 납입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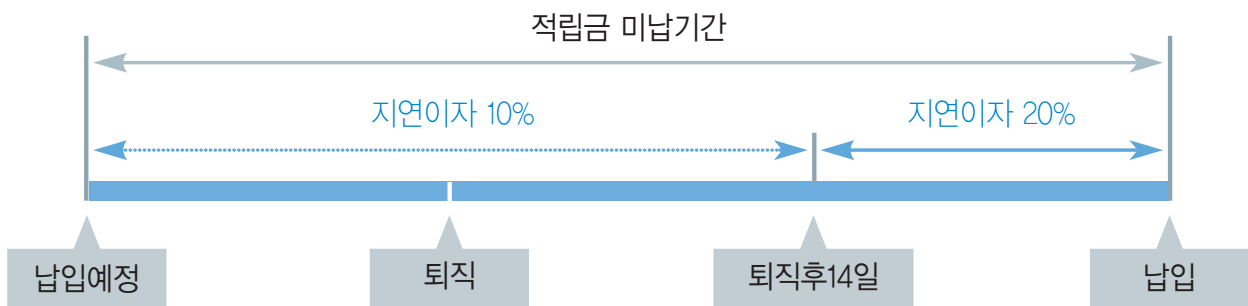
기업은 규약에 정한대로 연 1회 이상 매년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합니다.

• 적립금 납입기한 연장

DC형과 기업형IRP에 가입한 기업은 노사합의에 의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납입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납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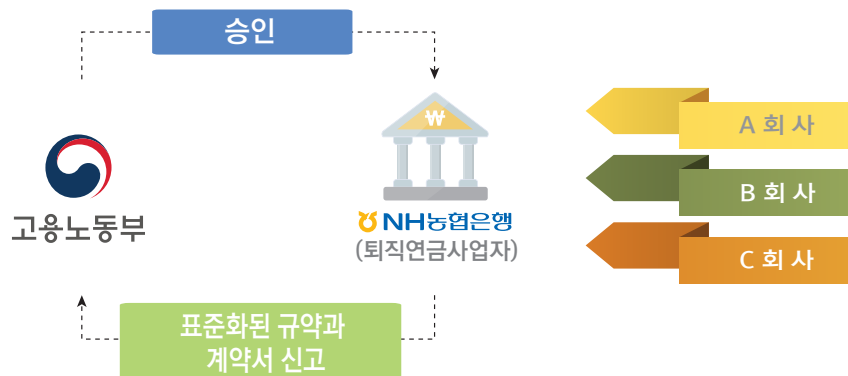
기업이 정하여진 기일(규약에 따라 납입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 근로자에게 미납사실 및 납입기한 통지



※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표준형 DC



· 가입방법

금융기관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준규약 사항

표준규약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

표준형DC제도의 특성과 명칭, 가입대상 사업의 범위 및 특성,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디폴트 옵션, 탈퇴 사유와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 디폴트옵션 :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하여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규약에서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운용하거나 운용 방법을 정하는 기준

표준계약서 규정 사항

표준계약서 규정 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6조)

표준규약의 이행, 제도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와 절차 등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개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I 가입대상

목적	대상
퇴직급여 수령	퇴직예정자
세액공제 및 여유자금 적립	소득이 있는 누구나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

I 납입한도 및 운용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합산) +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운용방법 :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 운용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등)으로 운용 가능

I 개인형IRP 왜 가입해야하나요?

세액공제 혜택	개인의 추가 납입액 중 연간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과세이연 효과	퇴직급여 수령 시, 세금 차감없이 전액 입금되어 세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 가능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50% 감면

퇴직연금제도 중단 등

I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

중단	사 유	일시적인 재정압박 및 규약상 명시된 중단사유 또는 규약위반으로 제도운영 중단
	업무처리	퇴직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 기본 업무유지
폐지	사 유	폐업, 노사합의에 의한 폐지 결정,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제도를 폐지
	업무처리	계약 해지, 기존 적립금 개인형IRP로 이전(중간정산 개념)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I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및 지급신청 안내

- 대 상 : NH농협은행 퇴직연금 가입업체 중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입자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및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고객센터(1588-5995) 및 거래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이용방법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접속▶금융정보조회▶‘미청구퇴직연금 조회’ 또는 앱스토어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 가능

퇴직연금 절세전략

I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적립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비과세 하였다가 급여 수령시 과세합니다.

▶ 과세이연효과

- 퇴직연금은 소득원천별 과세체계가 상이하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40%,50%^{주1)})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제상 유리합니다.

소득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일시금수령	연금 수령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 $\text{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수령액}}{\text{이연퇴직소득}} \times 70\%(60\%,50\%\text{주1))}$ 30%(40%,50%) 감면			
추가납입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주2)} (5.5 ~ 3.3%)			
		연령 및 유형	70세 미만	80세 미만	80세 이상
		세율	5.5%	4.4%	3.3%

주1)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과세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2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50%과세

주2) 타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 1,5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선택 적용)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I 퇴직연금 세액공제

- 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600만원) 외 퇴직연금납입금액에 대한 연 300만원 별도 공제한도 추가
- ② 연금저축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 최대 1,485천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시는 13.2% 최대 1,188천원 세액공제 가능
- ③ ISA 만기금액 개인형RP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추가세액공제 가능(당해 연도에 한함)

※예시

납입액		공제가능 금액	절세액	
			총급여액 구간별 적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5,500만원 이하(16.5%)	5,500만원 초과(13.2%)
0	900만원	900만원	1,485천원	1,188천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485천원	1,188천원
400만원	500만원	900만원	1,485천원	1,188천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485천원	1,188천원

개인추가납입 원금	일시금수령시		연금 수령시	
	원금	운용수익	원금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은 경우	기타소득세(16.5%)		연금소득세(5.5~3.3%) ^{주)}	
세액공제받지 않은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세(16.5%)	비과세	연금소득세(5.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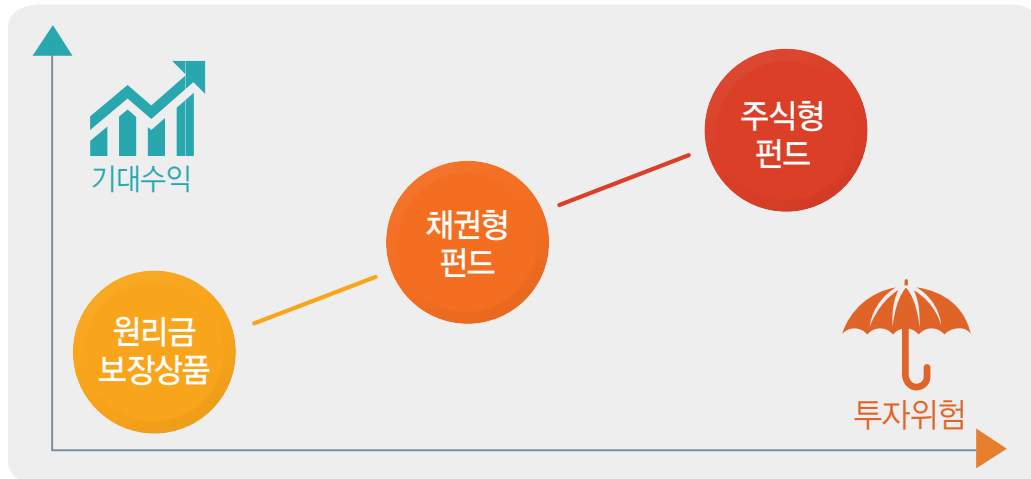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받은 경우 : 연금 수령시

주) 타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 1,5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선택 적용)

퇴직연금 운용전략

I 분산투자 등 안정적 투자원칙

- 위험이란 기대수익과 실제 받을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투자위험도 높습니다.



- 다음의 3가지 투자원칙을 준수하여 기대수익률에 상응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안정적인 운용 전략을 추천합니다.



분산투자

투자상품을 분산하여 개별 금융상품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위험 분산



장기투자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의 마술로 인해 투자기간이 길수록 운용성과 상승



적립식 투자

투자시기를 분산(매입가격 평준화)하여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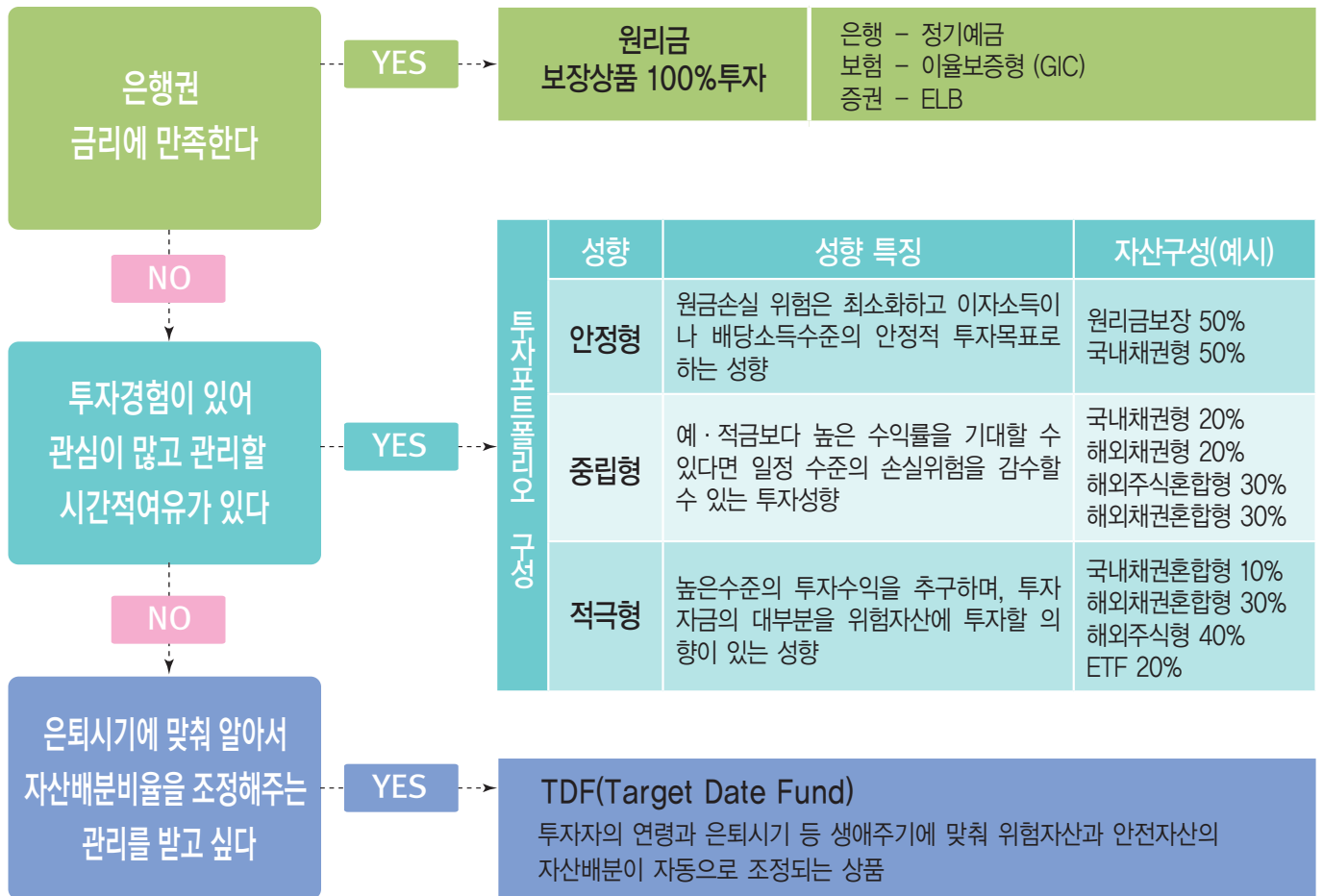
-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투자과정을 ‘자산배분’이라 합니다.
자산구성 비율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I 운용방법별 수수료 체계 및 매도기준가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수수료	해당없음	환매수수료 ^{취)}
상품보수	해당없음	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 보수 등
매도기준가	해당없음	환매하는 펀드의 가격을 판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 - 상품별 적용일 상이

^{취)} 상품별 환매수수료 부과 형태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투자유형별 추천 포트폴리오



※ 본 자료는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결과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I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에 따른 운용전략 안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유하거나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있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고객안내장



- 적용 대상 : DC/IRP 가입자
- 적용 시점 :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된 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6주가 경과했을 때
 - ※ 해당 제도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으로, 모든 DC/IRP 가입자는 예외없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 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초저위험) 포트폴리오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정할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며, 낮은 수익률은 적극적인 은퇴자산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정할 경우 기대수익이 시장수익률보다 큼에 따라 시장의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저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시중은행 정기예금 100%로 운용되며,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안정성 최우선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국민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40%
신한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40%
기업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20%

• 저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시중은행 정기예금 (50%)+TDF상품 (50%)로 운용되며, 안정성 및 정기예금+α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하나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5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O)	30%
NH-Amundi하나로TDF2030증권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O)	20%

• 저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

시중은행 정기예금 (50%)+TDF상품 (50%)로 운용되며, 안정성 및 정기예금+α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하나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50%
한국투자TDF알아서203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O)	30%
한화Lifeplus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O)	20%

• 저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3호

GIC 상품 (50%) + BF·TDF 상품 (50%)로 운용되며, 안정성 및 정기예금+α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DC/IRP)DB손해보험 이율보증형보험 3년 GIC	50%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O)	30%
우리다같이TDF203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lassO	20%

• **중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시중은행 정기예금 (30%)+TDF상품 (70%)로 운용되며,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하나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30%
NH-Amundi하나로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O)	4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O)	30%

• **중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

시중은행 정기예금 (30%)+BF·TDF상품 (70%)로 운용되며,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우리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30%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O)	40%
KB온국민TDF205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H)O퇴직	30%

• **중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3호

시중은행 정기예금(30%)+TDF상품(70%)로 운용되며,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우리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30%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205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O)	40%
한화LIFEPLUS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O)	30%

• **고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TDF상품 (100%)로 운용되며,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NH-Amundi하나로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O)	4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O)	40%
키움키워드림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20%

• **고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

BF·TDF상품 (100%)로 운용되며,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O)	50%
삼성한국형TDF2050증권투자신탁UH[주혼-재간접]_O(디폴트옵션)	50%

• **고위험** –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3호

BF·TDF상품 (100%)로 운용되며,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_O	40%
NH-Amundi하나로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O)	30%
KB온국민TDF205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H)O-퇴직	30%

급여지급절차(IRP이전) 및 수급요건

퇴직급여의 지급은 일반 요구불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IRP계좌로 급여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급여이전 예외 사유(개인형 IRP가 아닌 일반 요구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 ▶ 가입자가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에 따라 현물이전 가능여부 별도확인 필요함.

IRP 이전시 효과

- ▶ 퇴직금을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은퇴자금을 한 곳에 모아 은퇴자산플랜 관리가 용이합니다. ▶ 과세이연으로 운용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 선택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운용지시서를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등) 및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 및 투자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70/100 초과 불가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5. 7. 1.부터 전 금융기관에서 자산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운용이 제한되어 타사정기 예금 또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운용지시 하여야 합니다.

I 수급요건

구분	내용
연금	• 연령요건 : 만 55세 이상 • 납입요건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단,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하는 경우 제외) • 수령요건 : 연금수령한도^{주1)} 내에서 인출
일시금	• 일시금 수급을 원하거나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text{연금수령한도}^{\ast} =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text{주1)}}}{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주2)}}} \times 120\%$$

^{주1)} 매년 1월1일(과세기간 개시일)의 평가금액 (단,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연금수령 개시 전일자 평가금액)

^{주2)}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단, '13.3.1 전 가입한 연금계좌 및 '13.3.1 전 가입한 DB제도로 전액이 IRP로 과세이연한 경우 : 6년차 적용)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연금수령한도 미적용시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은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 인출 시 소득원천별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 중도인출 : 적립금의 100% (DB제외)
-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까지(5천만원 한도)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사유 및 요건일 경우 고시하는 한도까지 가능)

중도인출 법정사유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 근무동안 1회로 한정)
- ③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DC제도의 경우, 가입자 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임금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받은 퇴직연금담보대출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 '26. 1월 현재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NH농협은행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담보대출 가능하며, 자금용도별 대출한도는 자금용도에 필요한 금액 내에서 각각 상이합니다.
- 대출상품은 당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이전

I 계약이전

계약이전이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변경, 사업자 변경에 따른 가입자 이동 등을 의미합니다.

계약이전 사유

- ① 기업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기업형IRP 또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일부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③ 확정기여형(DB)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가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경우
- ④ 계열사 진출입, 합병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 ⑤ 금융기관이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⑥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계약이전 절차]



I 계좌이체

계좌이체란?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절차

· 대상 :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IRP)

*단,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과의 이체인 경우 만 55세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퇴직금 재원은 즉시), 전액이체 요건 충족 시 가능

I 실물이전

실물이전이란? 계약이전, 계좌이체 시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운용중인 상품을 **실물(상품) 그대로 타연금사업자로 이전**하는 제도

실물이전 유의사항

- ▶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등)의 변경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 실물이전 가능상품 : 예금, GIC, 원리금보장파생결합사채, 공모집합투자증권(MMF제외), ETF 등
- ▶ 동일 제도 간 신청 가능
(DB→DB, DC→DC, 기업형IRP → 기업형IRP, 개인형IRP → 개인형IRP)

[계좌이체/실물이전 절차]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이용 안내

I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접속하기

- 농협인터넷뱅킹 (<https://banking.nonghyup.com>) 접속 후 퇴직연금 메뉴 선택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I 입금예정상품 변경 및 보유상품 변경

향후 입금되는 부담금의 운용 상품 및 비율 변경이나 현재 보유 중인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NH Bank Retirement Pension menu. The '퇴직연금' (Retirement Pension)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1'. Within this menu, the '보유상품 교체매매 관리' (Manage Existing Product Exchange/Trade)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2'. The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Apply for Existing Product Exchange/Trade) option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2'.

I ETF 당일매수/당일매도

ETF상품을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NH Bank Retirement Pension menu. The 'ETF매수하기' (Buy ETF) and 'ETF매도하기' (Sell ETF) options are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2'.

I 개인형 IRP 신규가입

세액공제 또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NH Bank 개인 기입 카드

로그인 | 인증센터

조회 | 이체 | 공과금 | बैं킹관리 | 라운지 | 금융상품물 1 퇴직연금

MY퇴직연금 퇴직연금가입현황 가입자정보조회/수정 연간납입한도등록 수수료조회 차기계약유당일예상수수료조회 가입자교육	적립금운용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체험하기 퇴직연금운용전략 투자성향분석안내 나의투자성향분석 안내	퇴직연금 ETF ETF매수하기 ETF매도하기 ETF매매조회 ETF매매취소 ETF보유현황 조회	보유상품 교체매매 관리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보유상품 교체매매 조회 보유상품 교체매매 취소 교체매매 체험하기	만기상품 변경예약 만기상품 변경예약 신청 만기상품 변경예약 조회/취소
목표수익률 설정 목표수익률 설정 목표수익률 도달 매수 신청 목표수익률 도달 매수 조회/취소	조회 보유상품 평가현황 부담금납입결과조회 부담금납입내역	증명서 가입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유류허용보고서	개인형IRP 가입/해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 개인형IRP 예약가입 조회/취소 개인형IRP 해지	개인형IRP 연금/이체 개인형IRP 연금신청 개인형IRP 연금신청 조회/취소 개인형IRP 계좌이체신청

I 보유상품 평가현황

보유한 상품별 적립금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 Bank 개인 기입 카드

로그인 | 인증센터

조회 | 이체 | 공과금 | बैं킹관리 | 라운지 | 금융상품물 1 퇴직연금

MY퇴직연금 퇴직연금가입현황 가입자정보조회/수정 연간납입한도등록 수수료조회 차기계약유당일예상수수료조회 가입자교육	적립금운용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체험하기 퇴직연금운용전략 투자성향분석안내 나의투자성향분석 안내	퇴직연금 ETF ETF매수하기 ETF매도하기 ETF매매조회 ETF매매취소 ETF보유현황 조회	보유상품 교체매매 관리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보유상품 교체매매 조회 보유상품 교체매매 취소 교체매매 체험하기	만기상품 변경예약 만기상품 변경예약 신청 만기상품 변경예약 조회/취소
목표수익률 설정 목표수익률 설정 목표수익률 도달 매수 신청	2 보유상품 평가현황 부담금납입결과조회	증명서 가입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개인형IRP 가입/해지 개인형IRP 신규가입 개인형IRP 예약가입 조회/취소	개인형IRP 연금/이체 개인형IRP 연금신청 개인형IRP 연금신청 조회/취소

I 가입자교육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NH Bank 개인 기입 카드

로그인 | 인증센터

조회 | 이체 | 공과금 | बैं킹관리 | 라운지 | 금융상품물 1 퇴직연금

MY퇴직연금 퇴직연금가입현황 가입자정보조회/수정 연간납입한도등록 수수료조회 차기계약유당일예상수수료조회	적립금운용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체험하기 퇴직연금운용전략 투자성향분석안내 나의투자성향분석 안내	퇴직연금 ETF ETF매수하기 ETF매도하기 ETF매매조회 ETF매매취소 ETF보유현황 조회	보유상품 교체매매 관리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보유상품 교체매매 조회 보유상품 교체매매 취소 교체매매 체험하기	만기상품 변경예약 만기상품 변경예약 신청 만기상품 변경예약 조회/취소
2 가입자교육				

퇴직연금 모바일앱 이용 안내

I NH 퇴직연금 APP ·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애플iOS(App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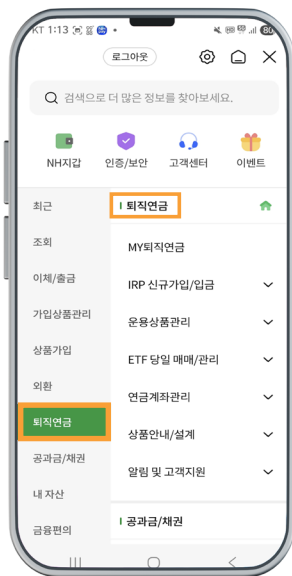
올원뱅크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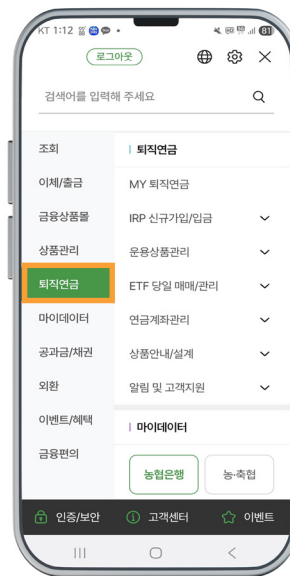
NH스마트뱅킹 검색

I 퇴직연금 메뉴위치

올원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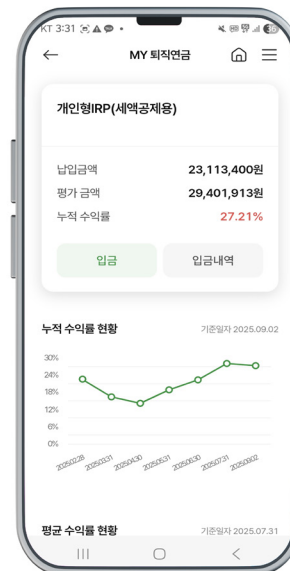


NH스마트뱅킹



I MY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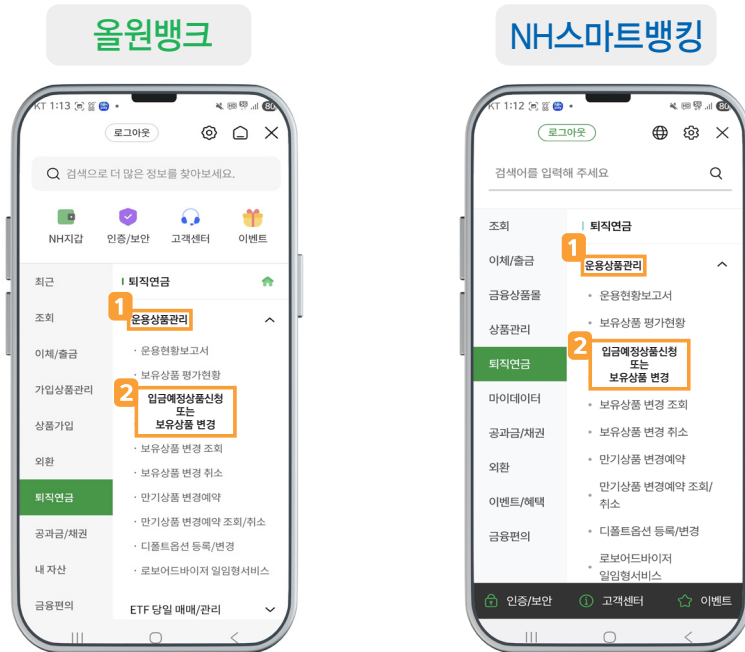
나는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있을까? 나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가입자들과 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I 입금예정상품 신청 및 보유상품 변경

향후 입금되는 부담금의 운용 상품 및 비율을 변경하거나, 현재 보유중인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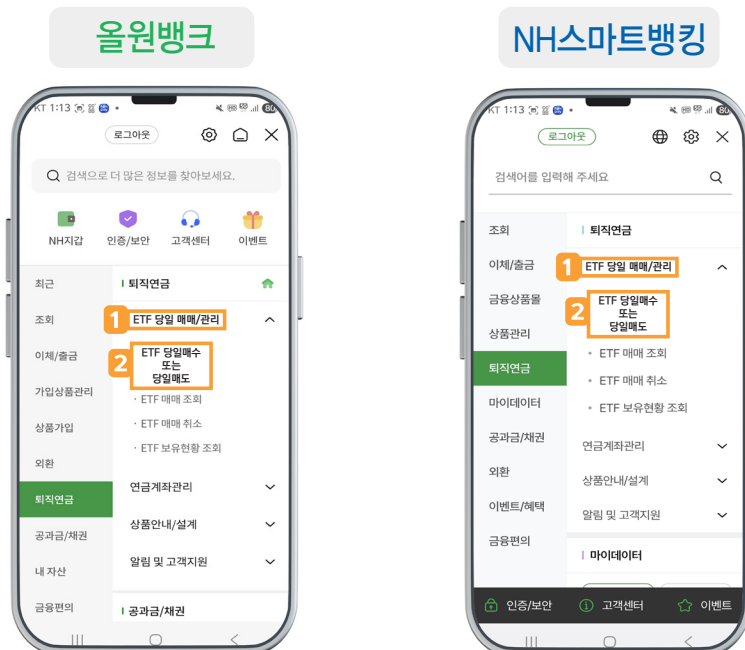
- 1** 운용상품관리 **2** 입금예정상품신청 또는 보유상품 변경



I ETF 당일매수/당일매도

ETF상품을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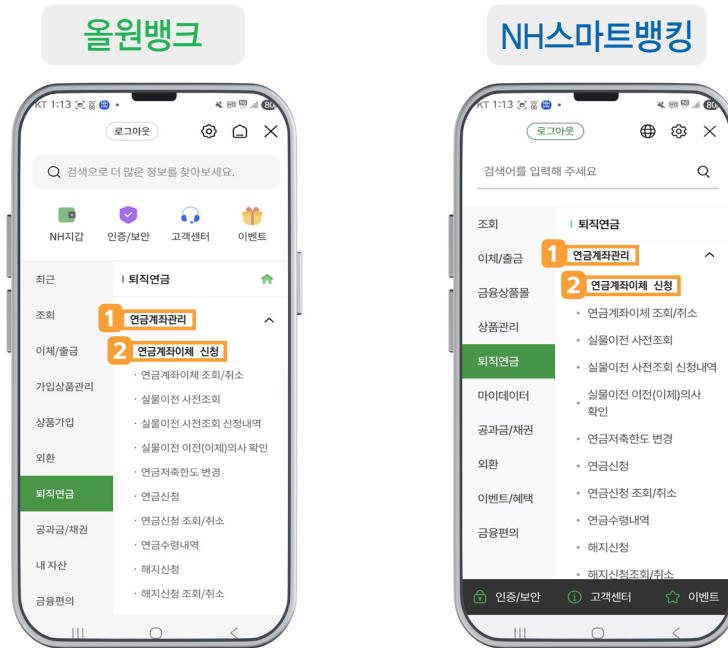
- 1** ETF 당일 매매/관리 **2** ETF당일매수 또는 당일매도



I 계좌이체 및 실물이전

타연금사업자에서 농협은행으로 연금계좌 가져오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금계좌관리 2 연금계좌이체 신청



퇴직연금 카카오톡 채널 활용 방법

매월 수익률 현황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해보세요.
※ 알림톡 수신 신청 방법 : 스마트뱅킹/올원뱅크 > 퇴직연금 > 알림 및 고객센터 > 알림서비스 설정 > 입금 및 지급 알림 > 알림톡 선택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전문상담센터 T.1588-5995
(상담시간 : 영업일 09:00~18:00)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https://banking.nonghyup.com>



농협은행 퇴직연금 어떤 점이 좋나요?

- **전국 최다 지점** : 전국 1,067개 지점을 통한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26.2월말 기준]
- **개인형 IRP 수수료 면제 혜택** :
 - 1) 연금지급 등록 계좌 운용 · 자산관리수수료 전면 면제
 - 2) 펀드가입금액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 3)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 운용금액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 **다양한 상품 라인업** : 고객 니즈와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 보유!

NH퇴직연금 APP

NH올원뱅크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전문상담센터 ☎ 1588-59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